

대구지방법원 2021. 11. 17 선고 2021가단11601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, 성승용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진영, 배형근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0. 20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7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12. 22. 체결된 매매예약은 이를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6. 12. 23. 접수 제56221호 및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. 12. 23. 접수 제309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(부동산별 가등기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)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C는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793793호로 확정된 판결(2015. 4. 10. 선고되고, 그 무렵 확정됨)에 따라 “6,354,954원 및 이에 대하여, 4,068,00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1999. 7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”을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다.

나.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12. 22.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하고,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. 위 가등기경료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다.

[증거]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달서구, 서울특별시 서초구, 익산시, 김제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,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는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므로, 위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는 이에 대하여, 자신은 2011. 10. 17. C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, 그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위 각 증거에 의하면, C는 피고 남편의 친구인 사실이 인정되고, 그와 같은 관계에다 위 가등기가 대여 당시가 아닌 수년 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 청구 인용

판사 김형한

별지목록

부동산의 표시

- 가. 전라북도 익산시 D 도로 230㎡ 중 230분의 2 지분
 나. 전라북도 익산시 E 대 1054㎡ 중 1054분의 15 지분
 다. 전라북도 익산시 E, F G동
 [도로명주소] 전라북도 익산시 H
 일반철골구조 관넬지붕
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
 소매점 155.2㎡ 중 155.2분의 2.3 지분
 (이상 공유자 C,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관할)
 라. 전라북도 김제시 I 답 506㎡ 중 506분의 2 지분
 마. 전라북도 김제시 J 답 321㎡ 중 321분의 11 지분
 (이상 공유자 C,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관할)
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표시

(별지목록 가. 내지 다. 기재 부동산)

-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6년 12월 23일
 접수 제56221호
 가등기권자 B
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표시

(별지목록 라. 내지 마. 기재 부동산)

-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년 12월 23일
 접수 제30970호
 가등기권자 B

